



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

# 의료폐기물 관리요령



인천광역시 서구청

# **| Index**

**1.의료폐기물의 종류**

**2.의료폐기물 관리요령**

**3.자주 묻는 질문**

# 1. 의료폐기물의 종류

## 의료폐기물 분류

구분		내용(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)
격리의료	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
위해의료	조직물류	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·장기·기관·신체의 일부, 동물의 사체, 혈액·고름 및 혈액생성물(혈청, 혈장, 혈액제제)
	병리계	시험·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, 배양용기, 보관균주, 폐시험관, 슬라이드, 커버글라스, 폐배지, 폐장갑
	손상성	주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 칼날, 한방침, 치과용침,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
	생물화학	폐백신, 폐항암제, 폐화학치료제
	혈액오염	폐혈액백,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,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
일반의료		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 붕대, 거즈, 일회용 기저귀, 생리대, 일회용 주사기, 수액세트

### ※최근 법개정에 따른 분류 시 주의사항

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, 용기 등은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  
이에 따라, 보관방법(4도 이하 보관) 등을 준수하여야 함

# 1. 의료폐기물의 종류

## 의료폐기물 종류 주요 사례

- ✓ 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 붕대, 거즈, 일회용기저귀, 생리대, 일회용주사기, 수액세트는 일반의료폐기물(고상)으로, 체액·분비물·배설물만 있는 경우 일반의료폐기물(액상)으로 처리
- ✓ 일반의료폐기물
  -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진료, 치료,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저귀, 생리대
  -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·치료·시험·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
  - 치과, 이비인후과, 내과, 소아과 등에서 석션기를 통해 코나 입에서 배출되는 분비물 및 튜브
  -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외부충격에도 캡이 분리되지 않아 손상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
  - 혈액 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석고, 캐스트, 스프린트
  - 치과에서 발생하는 피, 고름, 분비물 등이 묻어있는 아말감

#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#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

#### 종류별 전용용기 구분

폐기물 종류	전용용기	비고
격리의료폐기물	합성수지류 상자형	치아 제외
조직물류폐기물		
손상성폐기물		
액체상태의 폐기물		
그 밖의 의료폐기물	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	

※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%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담아 배출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

### 전용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 (1)

- ✓ 전용용기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의 용기를 사용(구조·규격·품질 및 표시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)
  - 병원 관계자는 전용용기 구매 시 검사결과서를 요구하여 검사결과서를 확인
- ✓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 금지
- ✓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(진찰·치료 및 시험·검사행위 종료)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
  - 다만, 대형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개별포장 가능
- ✓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
- ✓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은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처리
- ✓ 골판지류 용기의 내부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

### 전용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 (2)

✓ 전용용기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



폐기물 종류	도형 색상	
격리의료폐기물	붉은색	
위해의료폐기물 및 일반의료폐기물	봉투형	검정색
	상자형	노란색
재활용 태반	녹색	

※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,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

#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#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

#### 전용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 (3)

##### <취급 시 주의사항>

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.			
배출자		종류 및 성질과 상태	
사용개시 연월일		수거자	

- ✓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재  
다만,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기재할 수 있음
- ✓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,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, 중량(g),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 기재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적정관리 사례



표기사항 미기재



표기사항 전부 기재



(원급시 주의사항)			
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			
배출자	OO의원	종류 및 성질의 기재	위생의료
작성일자	2017.2.7.	수거자	OOO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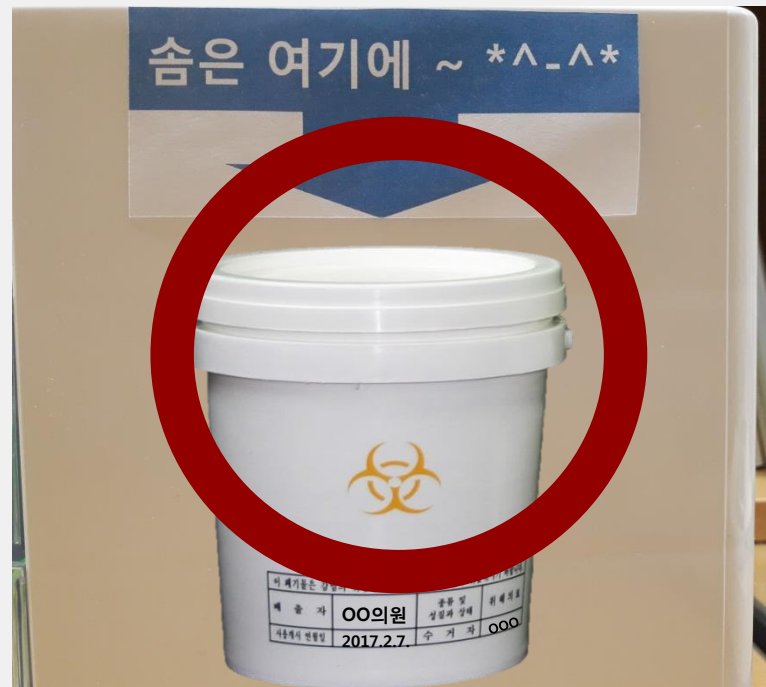
##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적정관리 사례



전용용기 미사용



전용용기 사용

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 의료폐기물 보관방법

### 의료폐기물 보관기간

의료폐기물 종류	보관기간	비고
격리의료폐기물	7일	
조직물류폐기물	15일	치아 제외
병리계폐기물		
생물화학폐기물		
혈액오염폐기물		
일반의료폐기물		
손상성폐기물	30일	
조직물류폐기물(치아만 해당)	60일	

※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은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 의료폐기물 보관방법

###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보관방법

✓ 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

-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,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

✓ 그 밖의 의료폐기물: 밀폐된 전용의 보관시설에 보관

✓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 기관

: 의원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혈액원, 동물검역기관, 동물병원, 국가나 지자체 시험·연구기관,

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·발명에 관한 시험·연구소, 장례식장, 교도소·소년교도소·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,

기업체 부속 의무시설, 군부대 의무시설, 노인요양시설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 의료폐기물 보관방법

###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세부기준

- ✓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·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
- ✓ 소독약품·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
- ✓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,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,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 가동
- ✓ 보관창고,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
  - ※약물소독의 종류
    - : 석탄산수(석탄산 3%), 크레졸수(크레졸액 3%), 승홍수(승홍 0.1%, 식염수 0.1%, 물 99.8% 혼합액), 생석회(대한약전 규격품), 크롤칼키수(크롤칼키 5%), 포르마린(대한약전 규격품), 그 밖의 석탄산 3%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
- ✓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며,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
- ✓ 의료폐기물의 종류·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

#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# 의료폐기물 보관방법

####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법적서식


	의료폐기물 보관 표지	
	① 폐기물 종류:	② 총 보관량:
③ 보관기간:	④ 관리책임자:	
⑤ 취급 시 주의사항 - 보관 시: - 운반 시:		
⑥ 운반장소:		

- ✓ 보관창고,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
- ✓ 표지판의 규격: 가로 60cm 이상 X 세로 40cm 이상 (냉장시설은 가로 30cm 이상 X 세로 20cm 이상)
- ✓ 표지의 색깔: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 의료폐기물 보관방법

###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예시

	의료폐기물 보관 표지	
	<b>① 폐기물 종류</b> - 격리의료폐기물: - 위해의료폐기물: 조직물류폐기물   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  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- 일반의료폐기물	<b>② 총 보관량</b> 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10 kg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10 kg</div> 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kg</div>
	<b>③ 보관기간</b> - 격리의료폐기물: 7일 - 손상성폐기물: 30일 - 위해의료폐기물, 일반의료폐기물: 15일	<b>④ 관리책임자</b> 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5em;"><b>박보검</b></div>
	<b>⑤ 취급 시 주의사항</b> - 보관 시: 전용용기 밀폐포장, 종류별 분류, 용기 중량 기록, 격리의료폐기물 및 조직물류폐기물은 냉장보관 - 운반 시: 흘날림 방지, 밀폐포장, 감염주의	
	<b>⑥ 운반(처리) 예정 장소</b> - 운반자: 0000 (상호기재) - 처리자: 0000 (상호기재)	

#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#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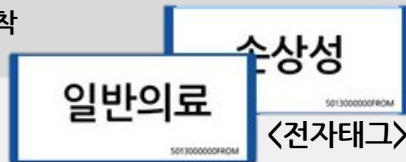
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전경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 의료폐기물 위반 사례

### 의료폐기물 주요 위반 사례

- ✓ 전용용기 미사용
  - 옮겨 담을 수 없음
  - 진료가 끝난 즉시 전용용기에 보관
- ✓ 보관용기 재사용
- ✓ 보관용기에 사용개시일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용
- ✓ 보관표지 미부착
- ✓ 보관표지 내용 미기재
- ✓ 전자태그 미부착



※ 보관창고(장소) 입고 전까지 폐기물종류, 성상, 중량 등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함

### 의료폐기물 위반 사례별 처벌기준

- ✓ 환경오염
  - 폐기물관리법 제13조(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 
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✓ 보관기준 위반
  - 보관기간 초과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-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미사용  
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✓ RFID 사용의무 위반
  - 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
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# 처리증명 변경

✓ 의료폐기물 종목 추가

예시) 조직물류폐기물이 새로이 발생

✓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

- 단, 대표자 변경은 변경대상이 아님

✓ 확인 받은 의료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이 30% 이상 증가 (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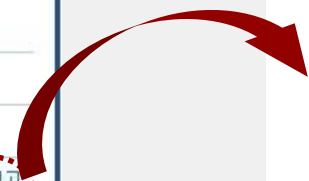
✓ 폐기물 처리자, 처리방법의 변경

# 2.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

## 의료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

관리자 메뉴

- 기초정보관리
- 전자인계서 관리
- 실적보고 관리
  - 지정/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
    - 실적보고 현황관리
    - 실적보고 분석관리
  - 건설폐기물 실적보고
    - 실적보고 현황관리
  - 시군구 보고관리
- 감량계획/실적 보고 관리
- 부가서비스 관리
- 비교분석 정보 조회
- RFID
- 수출입폐기물관리



(앞쪽)

### (2016년도)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(배출자용)

문서번호 \_\_\_\_\_ 시행일 \_\_\_\_\_  
 수신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 
 발신: (업소명) **도개비병원** (대표자) **공유** **공유**

① 업소명	<b>도개비병원</b>	② 소재지	분류번호	<b>인천광역시 서구로 307(삼곡동)</b>						
③ 대표자	<b>공유</b>	④ 전화번호	<b>032-000-0000</b>	⑤ 사업자등록번호	<b>111-11-11111</b>					
⑥ 배출시설	1. 대기 중 2. 수질 중	⑦ 업종	<b>(2의 기타 조건업) 86909-09</b>							
⑧ 공단		⑨ 주 생산품		⑩ 종업원 수	명					
⑪ 제품제조공정										
⑫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	1. 신고번호 제 _____ 호 2. 신고일: _____ 3. 관리번호 제 <b>16-04-00</b> 호 4. 확인일: <b>2016. 01. 01.</b>									
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보유현황										
1. 시설명		2. 사용개시일	3. 처리능력(톤/일)			4. 처리량(톤/년)				
구분	종류		계	지정	일반	계	지정	일반		
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		( )								
매립시설		( )	설치승인면적		매립가능용량		기 매립량(해당 연도)			
			m <sup>2</sup>		m <sup>2</sup>		m <sup>3</sup>			
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										
1. 종류 (분류번호)	2. 총 발생량 (톤/년)	3. 성질 · 상태	4. 자가처리		5. 위탁처리			6. 보관량 (톤/년)		7. 처리 비용 (천원)
			방법	처리량 (톤/년)	방법	구분	처리자	처리량 (톤/년)	이월 보관량	
<b>과적물류폐기물 (10-12-01)</b>	<b>0.5</b>	<b>역상</b>			<b>일방소각</b>	<b>2</b>	<b>1주1도개비</b>	<b>0.5</b>		
<b>병리폐기물 (10-12-02)</b>	<b>0.3</b>	<b>고상</b>			<b>일방소각</b>	<b>2</b>	<b>1주1도개비</b>	<b>0.5</b>		
( - - )										
( - - )										
( - - )										

※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

# 3. 자주 묻는 질문

##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

Q. 격리의료폐기물, 탈지면 등 일반의료폐기물과 생물화학, 병리계 등 위해의료폐기물의 혼합 보관 가능 여부?

✓ 격리의료폐기물, 위해의료폐기물, 일반의료폐기물 중 봉투형,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폐기물과 합성수지 용기에 보관하는 폐기물을 구분하여 혼합 보관 가능

✓ 다만, 격리의료폐기물이 위해의료폐기물 또는 일반의료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도형은 붉은색으로 표기하여야 하며, 보관기일은 격리의료폐기물의 보관기일(7일)을 따라야 함

# 3. 자주 묻는 질문

## 봉투형 용기 사용방법

**Q.**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를 위해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처리하는 경우, 사용개시 연월일의 기준은?

- ✓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기재할 수 있음

예시) 봉투형 용기에 일반의료폐기물을 '16.11.1.부터 보관하여 사용하고 상자형 용기에 '16.11.10.에 다시 담았을 경우 상자형 용기의 사용개시 연월일은 '16.11.10.

# 3. 자주 묻는 질문

## 링겔병의 분류

**Q.** 병원에서 사용하고 난 수액공병(링겔병) 및 앰플공병 등은 사업장폐기물인지? 아니면 의료폐기물 또는 다른 폐기물로 분류되는지?

- ✓ 분리가 가능한 수액세트 중 주사바늘과 연결된 줄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
- ✓ 수액백 및 링겔병이 줄 등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
- ✓ 항암제, 백신 등을 투여하는데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

※ 수액백 및 링겔병 등이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

# 3. 자주 묻는 질문

## 기타 질의회신 사례

### 의료폐기물인 경우

- ✓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피, 고름은 조직물류폐기물
- ✓ 시험관, 칼날, 한방침 등 1회용 이외는 자체 소독 등으로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 버릴 때는 의료폐기물 처리
- ✓ 「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」을 적용 받는 세탁물(침구류, 의류 등)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오염된 물품(수술용장갑 등)은 의료폐기물로 처리
  - ※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 후 폐기하는 경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
- ✓ 병·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치아는 조직물류폐기물, 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
- ✓ 의료행위 시 발생된 피고름, 분비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예외
  - ※ 폐기물처리계획 확인,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명시 필요

# 3. 자주 묻는 질문

## 기타 질의회신 사례

###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

- ✓ 치아 치료 후 환자의 치아 세척수, 의료기기 세척수
- ✓ 재택환자로부터 발생하는 탈지면, 손상성 폐기물 등
- ✓ 진료, 치료, 투약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
- ✓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위해 깎은 동물의 털, 손·발톱,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, 패드, 휴지 등

Made by.

**인천광역시 서구청**

**폐기물관리팀**

Copyright 2017. 인천광역시 서구청 폐기물관리팀 all rights reserved.